

#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9. . 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개정이유

『마포자원회수시설 폐기물 광역처리에 관한 협약서(2009.2.14)』에 따라 마포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타 자치구가 중구 및 용산구에서 종로구 및 서대문구가 추가됨에 따라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기금 조성 대상을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우리구에 기금을 납부하는 자치구 추가(2개구→4개구)

『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』  
제2조(기금의 조성) 1호

- “마포자원회수시설 폐기물 광역처리에 관한 협약서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구에 납부하는 금액”을 “마포자원회수시설 폐기물 광역처리에 관한 협약서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· 서울특별시 용산구 · 서울특별시 종로구 ·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납부하는 금액”으로 변경

나.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춰 용어 정비

## 3. 조례안 : 따로붙임

#### 4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#### 5. 기타사항

가. 관련근거

『마포자원회수시설 폐기물 광역처리에 관한 협약서(2009.2.14)』

나. 입법예고 : 2009. 3. 5. ~ 2009. 3. 24(제출된 의견 없음)

다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·의결(2009.3.26)

라.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
일부개정 조례안 1부

마. 신·구 조문 대비표 1부.

##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용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의거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와 서울특별시 용산구”를 “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· 서울특별시 용산구 · 서울특별시 종로구 · 서울특별시 서대문구”로 한다.

제3조제4호 중 “내지”를 “부터”로 한다.

제5조제6항 중 “잔입 기간”을 “남은 기간”으로 한다.

제6조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2조제3항 중 “지방재정법”을 “「지방재정법」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재무회계규칙”을 “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」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설치및운용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에 의거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따라 조성되는 재원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<u>서울특별시 마포구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</u>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기금의 조성) (생략)</p> <p>1. 마포자원회수시설 폐기물 광역처리에 관한 협약서에 <u>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구에</u> 납부하는 금액</p> <p>2. (생략)</p> <p>제3조(기금의 용도) (생략)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위 제1호 <u>내지</u> 제3호의 사업과 관련된 계획·조사의 연구사업과 용역</p> <p>5. ~ 6. (생략)</p>	<p><u>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<u>따라</u>----- ----- -----<u>서울특별시</u> <u>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</u>----- ----- -----</p> <p>제2조(기금의 조성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 ----- <u>따라 서울특별시</u> <u>중구 · 서울특별시 용산구 · 서울특별시</u> <u>종로구 · 서울 특별시 서대문구</u>----- 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기금의 용도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<u>부터</u> ----- -----</p> <p>5. ~ 6.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           ① ~ ⑤ (생략)            ⑥ 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<b>잔임 기간</b>으로 한다.</p> <p>제6조(위원회의 기능) (생략)            1. ~ 2. (생략)            3. <b>기타</b> 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</p> <p>제12조(기금의 운용관계 공무원)            ① ~ ② (생략)            ③ <b>지방재정법</b>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,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.</p> <p>제14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            ① (생략)            ② 구청장은 <b>제1항의 규정에 의한</b>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.</p> <p>제15조(관계규정의 준용 등)           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계현금의 수입·지출·출납·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·물품의 관리·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<b>의한다</b>.           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<b>서울특별시마포구재무회계규칙</b>을 준용한다.</p>	<p>제5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          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⑥ -----            -----  <b>남은 기간</b>-----.</p> <p>제6조(위원회의 기능)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1. ~ 2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3. <b>그 밖에</b> -----            -----</p> <p>제12조(기금의 운용관계 공무원)           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③ <b>「지방재정법」</b>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.</p> <p>제14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            ①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②----- <b>제1항에 따른</b>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.</p> <p>제15조(관계규정의 준용 등)            ①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<b>따른다.</b>            ② ----- <b>「서울특별시마포구 재무회계 규칙」</b>을 준용한다.</p>